

중 국

[판례 분석]

녹음제품 사용료의 법적 성질과 그 산정 기준

2025. 8. 5.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녹음제품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녹음제품에 대해 복제, 발행, 대여 및 네트워크를 통한 양방향 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와 사용료 청구권을 모두 갖지만,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한 일방향 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적 권리인 사용료 청구권만 가짐. 이때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이 사용료 산정 기준을 미리 결정하고 이 기준이 관련 업계에 널리 통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료가 산정됨.

1. 현황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가 2025년 3월 발표한 <글로벌 음악보고서 2025>에 따르면 전 세계 음악 녹음제품 수입은 4.8% 증가했으며, 총 수입은 296억 달러에 달해 10년 연속 성장을 이룸. 중국의 음악 시장도 세계 음악 시장에서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료 스트리밍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스트리밍 수익이 69%를 차지하며 음악 시장의 수익률을 견인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악 저작물이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되고 있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음반제작, 배포 및 대여 등으로 인한 수입은 줄어들고 온라인 전송을 통한 수입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되는 음반 시장 내에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본문에서는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가 통합관리하는 음반을 무단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해 법원이 음악 제품 사용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와 그 산정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5)沪0116民初4393号	
관할 법원	1심	상하이시 진산구인민법원(上海市金山區人民法院)	
당사자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		1심: 원고
	A 회사		1심: 피고
	B 회사		1심: 피고
핵심 쟁점	1심	1. A 회사와 B 회사가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지 여부 및 사용료 산정 기준 2. A 회사와 B 회사는 자사가 사용한 녹음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 결과	1심	1. A 회사와 B 회사는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사용료는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A 회사와 B 회사는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에게 사용료 10,000위안과 합리적 지출 3,000위안을 지불하여야 함. 2. A 회사와 B 회사는 자사가 사용한 녹음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權法) 제8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및 제(3)항 ▪ 저작권집중관리조례(著作權集體管理條例) 제3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 저작권 분쟁사건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著作權民事糾紛案件适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제7조 제(2)항, 제26조		
최종 판결일	2025년 4월 22일		

(1) 사건 개요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이하 "음집협"이라 함)는 중국의 음악 및 녹화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권리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전국단위 저작권관리 사회단체임. 음집협은 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X 계정 명의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진행된 다수의 라이브 방송 중에서 음집협의 회원이 저작권을 보유한 11건의 음악이 포함된 상업 홍보 영상(이하 "사건 음악 제품"이라 함)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

였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음집협은 X 계정의 공동 운영자인 A 회사와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은 음집협이 국가판권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저작권 단체관리를 위한 사회 조직으로서 권리자로부터 수권받아 자신의 명의로 권리자를 대신해 사건 음악 제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A 회사와 B 회사 역시 동의하였음.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이 A, B 회사의 사건 음악 제품 사용료 지불 여부 및 그 산정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판단하였음.

- ① A, B 회사의 사용료 지급 여부
- ② 사용료 산정 방법
- ③ A, B 회사의 정보 제공 여부

(3) 법원의 판단

1) 사용료 지급 여부

녹음제품을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전송하거나 음성전송 기술 장치를 이용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경우 녹음제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한편 녹음제품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녹음제품에 대해 복제, 발행, 대여 및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이와 같은 권리는 녹음제품 제작자가 가진 저작권접권으로서 녹음제작자는 이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사용료를 획득할 권리를 가짐. 그러나 녹음제품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녹음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송하거나 대중에게 방송할 권리를 타인에게 허가하여 사용료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녹음제품 제작자의 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채권의 성질을 가진 재산권임. 따라서 녹음제품 사용료 청구권은 녹음제품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녹음제품의 공개전송 또는 방송에 대해 전적으로 향유하는 권리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녹음제품 제작자는 타인이 자신의 녹음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송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단지 그러한 타인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임.

본 안건에서 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A, B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X 라이브 방송 계정 명의로 사건 음악 제품이 공개적으로 방송되었음. 이와 같은 A, B 회사의 행위는 비록 사건 음악 제품의 제작자가 가지는 저작권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 음악 제품의 사용 행위에 대해 사건 음악 제품의 제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음집협은 사건 음악 제품의 제작자로부터 사건 음악 제품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A, B 회사는 음집협에게 사건 음악 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2) 사용료 산정 방법

타인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을 침해한 경우, 가해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가해자의 위법소득에 따라 배상해야 함.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가해자의 위법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권리 사용료를 참조하여 배상할 수 있음. 본 사건에서 A, B 회사가 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X 계정 명의로 사건 음악 제품을 방송한 행위는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 B 회사가 음집협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역시 배상금의 형식은 아니지만, 해당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 관해서는 법원은 이와 관련된 권리 사용료를 참조하여 이를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음.

본 사건에서 A 회사와 B 회사는 X 라이브 방송 계정을 통하여 총 5개월에 걸쳐 20여 차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함. 각각의 라이브 방송은 모두 다른 날짜 및 다른 시간대에 진행되었으므로 A, B 회사가 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X 계정 명의로 장기적·지속적·안정적으로 전자상거래 유형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됨.

<저작권집중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은 권리자의 위임을 받아 권리자의 녹음 및 녹화 제품을 사용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저작권집중관리조직과 사용자 대표가 협상하여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준을 결정함. 음집협이 제정한 <온라인 라이브 녹음제품 사용료 협상기준(互联网直播录音制品使用费协商标准)>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유형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라이브 계정의 연간 사용료는 10,000위안으로 책정되어 있음. 비록 음집협은 이와 같은 사용료 징수 기준이 사용자 대표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었거나 국가 저작권 주관 행정 부문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집협은 이와 같은 사용료 징수 기준을 통하여 수많은 전자상거래 라이브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에는 전자상거래 라이브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집협이 <온라인 라이브 녹음제품 사용료 협상기준>을 통하여 결정한 사용료 징수 기준이 전자상거래 라이브 업계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적용 조건과 응용 기초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됨.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사용료 징수 기준을 참조하여 A, B 회사가 음집협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재량으로 확정함. 한편 사용료 징수를 위한 사용 기간 산정에 관해서는 전자상거래 라이브 업계의 관행과 거래 관습을 참조하여 음집협이 사용자와 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때 연(年)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점이 있음. A, B 회사가 장기적·지속적·안정적으로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A, B 회사가 연 단위로 계산하여 음집협에게 사건 음악 제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결론적으로 A 회사와 B 회사는 음집협에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 10,000위안을 지급해야 함.

3) A, B 회사의 정보 제공 여부

<저작권집중관리조례> 제27조는 “사용자가 저작권집중관리조직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이 사용하는 저작물, 녹음·녹화 제품 등의 명칭,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사용 방식, 수량, 시간 등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함. 다만 사용허가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됨. 이 조항에 근거하여 A 회사와 B 회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건 음악 제품을 사용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음집협에 지급해야 하는바, A, B 회사는 음집협에게 2024년 동안 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X 라이브 방송 계정이 사건 음악 제품을 사용한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함.

3. 판례분석

본문의 판례에서 피고 A, B 회사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계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제작한 녹음제품을 사용하였음. 이 경우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해당 녹음제품 제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바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은 사용료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서 녹음제품 사용료의 법적 성질과 그 산정 기준을 제공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관련 내용을 살펴봄.

1) 녹음제품의 사용 행위

<저작권법> 제45조는 “녹음제품을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전송하거나 음성전송 기술 장치를 이용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경우 녹음제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자신이 제작한 녹음제품의 전송 및 방송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규정임. 여기서 녹음제품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시행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연의 소리와 기타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가수의 음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대화 또는 자연의 소리 등 저작권법상 시청각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소리를 녹음 제작한 것 모두 녹음제품에 포함될 수 있음. <저작권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녹음제품을 사용한 후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녹음제품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하여 공개적으로 전송하는 것”과 “음성전송 기술 장치를 이용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것” 두 가지가 존재함.

이 두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경우는 유·무선 방식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녹음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하여 대중이 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경우는 현장에 스피커 및 대형 모니터 등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그 현장에 있는 대중이 녹음제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함. 본문의 판례에서 A, B 회사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타인의 녹음제품을 대중에게 전송하였으므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음집협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2) 녹음제품 사용료의 법적 성질

녹음제품 사용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우선 <저작권법> 제44조 제(1)항과 제45조 규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음. 우선 <저작권법> 제44조 제(1)항은 “녹음·녹화제품의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녹음·녹화제품에 대해 타인이 복제, 발행, 대여 및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녹음·녹화제품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녹음·녹화제품에 대해 복제, 발행, 대여 및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함. 이와 다르게 <저작권법> 제45조는 녹음제품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녹음제품에 대해 타인이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전송하거나 음성전송 기술 장치를 이용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행위에 대해 보수를 받을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저작권법> 제44조 제(1)항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송하는 행위”와 제45조의 “녹음제품을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모두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전자의 경우 대중이 녹음제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양방향 전송을 의미하며, 후자는 대중이 녹음제품 감상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없고 전송자가 전송하는 때에만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일방향 전송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따라서 녹음제품 제작자는 자신의 녹음제품을 네트워크를 통해 양방향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용료 청구권과 함께 일반적 저작권과 유사하게 배타적 권리를 가지지만 그 녹음제품을 네트워크를 통해 일방향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오직 사용료 청구권만 가짐. 본문 판례에서 법원도 <저작권법> 제44조 제(1)항에 대해서는 녹음·녹화제품 제작자의 준물권적 권리가 인정되지만 제45조에서 규정한 녹음제작자의 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채권적 권리임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A, B 회사가 일방향 전송의 특징을 가진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의 사건 음악 제품을 대중에게 전송하기 위해 사전에 음집협회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사용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면 됨.

3) 사용료 산정 방법

녹음제품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녹음제품을 사용한 모든 상대방을 찾아내어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많은 국가에서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음악저작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조직을 두고 있음.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을 두고 있는데 <저작권집중관리조례> 제3조에서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을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어 권리자의 수권에 의해 권리자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음. 중국의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은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와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두 종류의 단체가 존재함.

이와 같은 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¹⁾에 의해 국무원 저작권관리부서가 고시하는 사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하거나 본문의 판례에서 음집협이 <온라인 라이브 녹음제품 사용료 협상기준>을 제정하여 직접 사용료 산정 기준을 결정할 수도 있음. 그러나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이 사용료 산정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와 약정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해야 함.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배상금이 저작권 사용료에 기초하여 산정될 수 있으며 녹음제품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가 비록 배상금은 아니지만 그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르면 사용자와

1) <저작권집중관리조례> 제25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 제43조 제2항, 제44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은 국무원 저작권관리부서가 공고한 사용료 산정 기준에 의거하여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사용자와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한다.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사용료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이 미리 결정한 사용료 산정 기준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사용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법원은 사용자가 음집협에 의해 미리 결정된 사용료 산정 기준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의 사용료 산정 기준 적정성 및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음. 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라이브 업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음집협과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라이브 녹음제품 사용료 협상기준>을 통해 제시된 사용료에 동의함. 특히 관련 업계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사실은 음집협이 미리 결정한 사용료 산정 기준이 해당 업계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게 보일 수 있음. 또한 법원은 녹음제품 사용기간의 확정 문제에 관해서도 비록 A, B 회사가 사건 음악 제품을 사용한 기간은 5개월에 지나지 않지만 <온라인 라이브 녹음제품 사용료 협상기준>에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 A, B 회사가 장기적·지속적·안정적으로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A, B 회사에게 음집협이 결정한 1년 사용료 10,000위안을 사용료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이는 법원이 어떤 사용료 산정 기준이 관련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산정 기준을 최대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유사한 사례에서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많은 음악 저작물 및 녹음제품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작권법 제44조 제(1)항과 제45조의 규정을 해석하여 각각의 경우 녹음제품 제작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 (2025)沪0116民初4393号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 <https://www.cavca.org/newsDetail/2154>